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해설편 102~102p 번호 : 13	해설	<p>13 근로기준법령상 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다태아 임부는 고려하지 않음)</p> <p>①~④ 변경 없음</p> <p>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여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.</p> <p>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대상에서 제외된다(근기법 제60조 제4항, 제61조 참조).</p>	<p>13 근로기준법령상 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다태아 임부는 고려하지 않음)</p> <p>①~④ 변경 없음</p> <p>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여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.</p> <p>2020.03.31. 시행된 개정 근기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의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므로, 기존의 정답 ⑤에서 정답 없음으로 변경한다.</p>
		수정 사유	법령 개정으로 인한 수정
해설편 108~108p 번호 : 24	문제-보기(지문)	<p>④ 15 30</p> <p>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(고평법 제19조의2 제3항).</p>	<p>④ 15 35</p> <p>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(고평법 제19조의2 제3항).</p>
		수정 사유	법령 개정으로 인한 수정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